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75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610	임미애 의원	2025. 7.21.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17.)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98	김태선 의원	2025. 8.29.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17.)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는 위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3. 24.)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한다.

제33조 중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u><신 설></u>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u>
<u>③ (생략)</u>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u>정지</u> 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u> -----.
1. ~ 3. (생략) ②·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 ----- -----

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 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 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성</u> <u>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u>성</u> <u>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 해바 <u>라기센터</u> ,----- ----- ----- -----.
---	---